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자신의 일에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업무 성과 저조, 잦은 지각, 결근, 태도 불량 등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BC주 법에 따르면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을 그만두는 시점을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당장 내보내려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전 통지와 보상

사전 통지 기간이나 보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가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최소한 다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1주분 임금
- 1년간 고용된 경우 2주분 임금
- 3년간 고용된 경우 3주분 임금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한 햇수당 1주분의 임금을 최대 8년치까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나 보상금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전에 12개월 이하 동안만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된 경우
- 근로자의 직무가 끝나서 고용주가 비슷한 직무를 제공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직장이 파괴된 경우(예: 화재, 홍수 등)

정당한 사유

고용주는 근로자를 내보낼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3개월 고용 후 사전 서면 통지나 보상금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직장 내 절도 행위, 동료 근로자 폭행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되면 고용주는 48시간 이내에 잔여 임금을 반드시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BC 주 근로 관련 법의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labour.gov.bc.ca/esb/



**This Project is made possible through funding from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